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0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김정호·정성호·임종성

김경협 · 김병욱 · 박재호

서동용 • 전재수 • 유후덕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 (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	
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	
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u>사회</u>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	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령으로 정하는 자	<u>협동조합연합회</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